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수도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1.01 ~ 2022.12		
사업내용	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사유지 토지 보상		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2-206 (등 5개소)		
총사업비	총 5,240,000천원	(국비)	(시비)5,24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사업비 (당해년도)	2,000,000천원	(국비)	(시비)2,00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상수도사업본부	계획설계과	신용철 3146-1401	송헌영 3146-1410	정호정 3146-141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-) 2,000,000	(x-) 2,000,000	(x-) 100
시설비	(x-) 0	(x-) 2,000,000	(x-) 2,000,000	(x-) 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	
시설비	○ 토지보상비 2,000,000,000	=	2,000,000천원

연차별 투자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기투자 (~2019)	2020	2021	2022 이후	비고
계	(x5,240)	(x-)	(x-)	(x2,000)	(x3,240)	
시설비	(x5,240)	(x-)	(x-)	(x2,000)	(x3,240)	토지보상비

3 사 업 설 명

사업목적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유지

사업근거

- 국토계획법(제48조, 제91조)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수립(계획설계과-4522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 6. ~ 2022. 12.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
- 추진방법 : 토지의 수용 등
- 사업의 주요내용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미집행 토지 보상

사업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

- 2021.1. ~ 2022. 12. : 토지 보상

추진경위

- 2000. 1. : 도시계획법 개정(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신설)
- 2020. 2. :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효 대상 재검토
- 2020. 5.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계획 수립
- 2020. 6. :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토지보상사업) 고시

2021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000,000	
토지매입	2021.01~2021.12	2,000,000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정수장 및 배수지) 내 토지 보상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향후 기대효과

○ 도시계획시설 유지하여 상수도 시설물 현황 유지

5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7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
2018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
2019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	(x-)